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436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나436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04701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유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석

변론종결 2021. 12. 8.

판결선고 2021. 12.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04701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65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4. 관할 행정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광주시 C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고, 피고는 2015. 6. 4. 원고의 조합장에 선임된 이후 2018. 11. 27. 해임될 때까지 원고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4. 18.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급여 없이 무보수로 조합장직을 수행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5. 6. 4. 조합 설립 당시에도 ‘2015. 6. 4.부터 조합장직을 무보수로 근무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조합은 상근임원 또는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7. 3.부터 2018. 9. 28.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149,655,08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무보수로 조합장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원고의 임원은 별도의 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보수청구권이 없고, 조합규약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던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할지 여부는 총회의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데, 원고는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보수규정을 제정한 바가 없고, 피고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를 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그런데 피고는 조합장 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수령하고,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지급액 총 149,655,08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위 149,65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의 조합 임원 업무비로 책정되어 있던 월 5,000,000원의 한도에서 지급된 것이고, 위 업무비는 당초부터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에게 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시공사인 D 측으로부터 원고의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비에 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가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원고의 조합장 직을 수행하였던 것이고, 원고의 조합원들 역시 피고에 대하여 급여 등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 외의 원고의 임직원들에게도 급여, 보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급액이 피고에 대한 보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급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이 사건 지급액의 지급으로서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 내지 23호증, 제25 내지 제32호증, 제36 내지 3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액은 원고에 대한 보수청구권이 없는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9,65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무보수로 원고의 조합장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뒤 원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2015. 6. 4. 무보수로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는 이 사건 약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그 직후인 2015. 7. 3.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액을 수령하기 시작하였다.

② 원고의 자금지출서류에 따르면 이 사건 지급액은 급료, 휴가비, 상여금,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그 중 급료 명목으로 3,000,000원이 매월 지급되었다. 피고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지급액은 급여와 상여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③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를 통하여 조합장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액을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④ 피고는 원고의 창립총회 당시 원고의 월간 운영비로 계상된 1,530만 원은 그 지출 내역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금액이고, 운영비 중 조합 임원의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500만 원은 조합장이 조합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업무비용이라고 밝혔으며, 월급여 대신 위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것이냐는 조합원의 질문에 대하여도 이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라 조합의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대답하였다.

⑤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임원들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보수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위한 보수규정을 제정한 바는 없다.

⑥ 피고는 2016. 10. 25.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2015. 6. 2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와 원고의 직원 급여로 45,902,555원을 지출하였고, 2016.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같은

명목으로 44,295,758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외부회계감사 보고를 추인하는 ‘조합 사업비 및 운영비 사용 추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이는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무보수로 원고의 조합장 직을 수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조합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액을 보수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

별지